



법령안 입법형식 체크리스트

※ 안내 : 각 부처 입안담당자는 법령안 입법 추진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입법형식의 적절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확 인 사 항

예

아니오

1 하위법령 입법 가능성

* 한 문항이라도 '예'인 경우 하위법령 입법 추진 가능

◇ 상위 법률의 규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가?

☐☐

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등 모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·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강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항의 경우 법률의 직접적인 위임 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

◇ 「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」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 사항인가?

- ① 포상금
- ② 예산 편성·집행으로 가능한 보조금
- ③ 임의적 절차로서 결정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
- ④ 행정정보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
- ⑤ 관계기관 협조
- ⑥ 불응 시 처벌·제재가 없는 강제되지 않는 행정조사
- ⑦ 수수료 및 사용료
- ⑧ 시범사업의 실시
- ⑨ 행정지도·권고

☐☐

2 법률 입법의 필요성

* 한 문항이라도 '예'인 경우에 한해서 법률 입법 추진

◇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법률로 정하게 한 사항인가?

☐☐

◇ 다른 법률에서 법률로 정하게 한 사항인가?

☐☐

◇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가?

☐☐

◇ 이미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, 예외 또는 특칙인가?

☐☐

◇ (국민의 권리제한·의무부과 사항이 아닌 경우) 국민공감대 또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·사회적 중요사항인가?

☐☐

3 기존 법률의 적용 또는 개정으로 반영 가능한가

* 한 문항이라도 '예'인 경우 기존 법률 적용 또는 개정 우선 검토

◇ 기존 법률과 입법목적이 동일·유사한가?

☐☐

◇ 기존 법률과 규율대상(수범자)이 동일·유사한가?

☐☐

◇ 기존 법률과 규제·지원 등 규율내용(집행수단)이 동일·유사한가?

☐☐

◇ 기존의 일반법령에 적용 가능한 내용이 있는가?

☐☐

아래 대표적 사례가 있으며, 그 밖의 세부 규정별 일반법령 사례에 대해서는 「[붙임] 입법형식 예시 안내 (입법 불요 또는 하위법령 등)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【사례 1】 행정(인허가 의제, 이의신청, 수수료 및 사용료 등)에 관한 일반법인 「행정기본법」

【사례 2】 국가가 부과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고금 관리법령

【사례 3】 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【사례 4】 행정지도, 공표 등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「행정절차법」